#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7

발의연월일: 2020. 8. 25.

발 의 자: 박재호 · 전재수 · 최인호

김정호·허 영·김수흥

한병도 · 김경협 · 박용진

이상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20여 개 기관·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보 상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31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 본문 중 "제127조제1항"을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
	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3
	1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
	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
	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
	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
	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
	동이용 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벌칙) <u>&lt;신 설&gt;</u>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
	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 ① ~ ③ (생 략)

제1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u>제127조제1항</u>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나 활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underline{2}$ $\sim$ $\underline{4}$ (현행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와 같음)
제128조(양벌규정)
제127조제2항